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68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의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와 군민의 생명 및 재산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역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진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 진화 참여 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9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대비·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임상·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재난방지구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 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구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구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구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